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심 사 보 고 서

1998. 3. 14
내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8년 3월 6일

· 회부일자 : 1998년 3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· 제2차 내무위원회(1998. 3. 14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박만순)

가. 제안이유

도지사의 임용권중 일부를 기관장이 4급이상인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소속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와 체계적인 인력관리등을 통하여 조직의 안정과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〈기관명〉

〈위임내용〉

- 지방공무원교육원 :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
- 보건환경연구원 : 지방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
- 충북개발사업소 :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도로관리사업소 소속기관내 전보권
- 산림환경사업소 : 지방연구사 및 7급이하 일반직, 농축산사업소 기능직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

※ 과(課)가 설치되지 않은 여성회관은 제외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: 오건영)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및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도지사의 임용권중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지방공무원교육원장에게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을,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지방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부내 전보권을 위임하였고

충북개발사업소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을, 산림환경사업소장과 농축산사업소장에게 지방연구사 및 7급이하 일반직·기능직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- 신·구조문 대비표